

의안번호	2215729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6.02.02.
추계번호	25C73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 (연합형통합대학 의 인가·운영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 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 계의 구축을 위하여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연합형통합대학(이하 “연합형통합대 학”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교육여건,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 을 각각 둘 수 있다.	
		(제3항) 연합형통합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둔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형통합대학의 지역특화 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연구 및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5항) 그 밖에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운영, 연합형통합 대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2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대학별로 총장을 둘 수 있는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¹⁾, 이에 근거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등은 대학 간 통·폐합(이하 “통폐합”)의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 참고로, 공립대학은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이 적용되고, 이외의 경우 조례 및 학칙 등을 따르고 있음
 -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은 대학 간 통폐합의 유형을 통합과 연합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 “통합”이란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연합”이란 2개 이상의 대학이 MOU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함²⁾
 - 개정안은 현행 기준과 별도로,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연합형통합대학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 개정안에 따르면 연합형통합대학은 지역별 특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 대학 별로 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1)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2)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교육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2. "통·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4. "연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표] 대학 통폐합 규정 체계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19 「국립학교 설치령」 §21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등교육법」 §19 「대학설립·운영 규정」 §2의4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유형	통합대학	연합대학	—
절차	○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 ○ 대학 간 합의	○ 대학설립·개편심사 위원회에 신청 및 심의·의결
첨부 서류	○ 통폐합 신청서 및 계획서 － 캠퍼스 특성화 방안 － 행정·학사조직 개편안 － 학칙 및 명칭 변경안 － 구성원 보호 대책 ○ 통폐합 합의서 ○ 회의록 사본 ○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 통폐합 계획서 － 학생정원 관리 방안 － 교사·교원, 수익용재산 확보율 관리 방안 － 구성원 보호 대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합형통합대학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 법령하에서도 대학 간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임
- ‘글로벌대학30’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내역사업으로서,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 또는 연합체 약 30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함
 - － 교육부는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개 이상 대학의 통합 및 연합에 기반한 공동 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는 '25년 27개 모델(4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 중 10개 모델(23개 대학)이 공동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임
 - － 교육부는 통합·연합을 전제로 선정된 대학이 통폐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³⁾

- 이에 선정 대학 중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7개 모델(17개 대학)에 대한 통폐합이 예정된 상태임
 -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⁴⁾은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대학은 대표 총장 외에 캠퍼스별로 총장을 두거나(강원대학교), 캠퍼스의 장을 부총장으로 보임하는 방식(부산대학교)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참고자료] 글로컬대학30 선정 대학 현황
-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동일 취지의 기존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만을 산출하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3)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2025.01.22, 15p

4)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글로컬대학30 선정 대학 현황

연번	대학명	구분	혁신 방향
1	강원대 강릉원주대	통합	○ 캠퍼스 특성화를 토대로 지역 거점대학 역할 수행
2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	○ 첨단 인프라 및 교육청·기업 연계로 에듀테크 거점 육성
3	안동대 경북도립대	통합	○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
4	충북대 한국교통대	통합	○ 지역과 연계하여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추진
5	전북대	단독	○ 산업도시 조성 및 국제캠퍼스화로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6	경상국립대	단독	○ 지역과 협력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
7	순천대	단독	○ 특화분야 중심으로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실무형 인재 양성
8	울산대	단독	○ 지산학 펀드를 조성하고 주력 산업단지에 멀티캠퍼스 설치
9	포항공과대	단독	○ 연구개발부터 글로벌화까지 지역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10	한림대	단독	○ 융합 클러스터 중심 운영구조 개편 및 AI 기반 인재 양성
11	건양대	단독	○ 국방산업 중심 체계 개편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 수행
12	경북대	단독	○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전환
13	국립목포대	단독	○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분야 집중육성
14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통합 연합	○ 연구기관 연합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인력 양성 수요에 대응
15	동아대 동서대	연합	○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
16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	연합	○ 초광역 연합 거버넌스 구축 및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 표준화
17	대구한의대	단독	○ 한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고 해외 사업화 추진
18	원광대 원광보건대	통합	○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를 조성
19	인제대	단독	○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
20	한동대	단독	○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전인지능 인재 교육모델을 개발
21	경성대	단독	○ K-컬처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22	순천향대	단독	○ AI 의료융합 분야에 특화하여 클러스터 모델 구축
23	전남대	단독	○ 인간중심 AI 인재 양성 및 AI-미래모빌리티 특성화

연번	대학명	구분	혁신 방향
24	제주대	단독	○ 지역 특색 교육 제공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	조선대 조선간호대	통합	○ 웰에이징 인재 양성 및 클러스터링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26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 초광역 통합대학 모델을 구축하여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
27	한서대	단독	○ K-항공산업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